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업무상 사고 규정 유형 신설 〉

■ 우재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790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업무상 사고 규정 유형 신설	2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2일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분류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기준은 노출 기간, 강도, 의학적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장기적 노출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최근 한 반도체 기업 근로자의 방사선 피폭 사례처럼 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단기간·급성 노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라 사고성 재해임에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함으로써 중대 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중대한 위험요인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업무상 사고 규정 유형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 ----- ----- -----. ----- -----.
1. 업무상 사고 가. ~ 마. (생략)	1. -----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설>	바. 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u>가능성이 인정되는 사고</u>
<u>바.</u> (생 략)	<u>사.</u> (현행 바목과 같음)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37조제1항제1호는 “업무상 사고”의 종류를 가목 내지 바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3조에서도 어떤 경우에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 더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규정은 어떤 경우에 업무수행 중이라거나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고, “사고”의 양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업무상 질병”과 “업무상 사고”를 비교하여 보면 “업무상 질병”으로 평가되는 경우 질병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 유무 심리에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보험급여 지급까지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입증의 어려움에 따라 재해 인정률도 낮게 나타남.

이에 개정안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사고가 업무상 질병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등의 경우에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업무상 사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업무상 질병과 깊게 연관된 사고를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고 “업무상 사고”로 보도록 함으로써 판단의 일관성을 기하고,

근로자에게 입증의 곤란함과 장기간 처리기간으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업무상 질병” 대신 “업무상 사고”로 판단하도록 하여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호 및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데에 입법의 의의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이 신설하고자 하는 사고 유형은 현재도 현행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에 포함되고 실제로 이에 따라 예컨대 단기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방사선 화상의 경우에도 업무상 사고로 포섭되고 있으며,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신설된 사고 유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현장 혼란이 우려되는바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